

2017년도 문화재위원회

제2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7. 2. 22.(수), 14:00 ~ 16:3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 ▣ 출석의원 : 김학범, 김용준, 류제현, 안계복, 우경식,
이두표, 이상석, 전영우, 황재하
(이상 9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 소형풍력발전기 설치(*설명)	(공개)
2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수상재난안전체험장 설치(*설명)	(공개)
3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 삼락수상레포츠타운 구조정 운영	(공개)
4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 내 호안도로 개설	(공개)
5	「제주 천제연 난대림」 주변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공개)
6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내 이동식 카약, 테우 탑승장 설치	(공개)
7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개)
8	「마라도천연보호구역」 내외 CCTV 및 보안등 설치	(공개)
9	「청원 공북리 음나무」 등 천연기념물 명칭 및 관리단체 변경	(공개)
10	「거창 수승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개)
11	「거창 용암정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	(공개)

【검토사항】

12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문화재구역 일부 해제 및 추가 지정 검토	(공개)
----	--	------

【보고사항】

13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46건)	(공개)
----	-----------------------------	------

【심의사항】

안건번호 천기 2017-02-01

1.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내 소형풍력발전기 설치

가. 제안사항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내 소형풍력발전기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내 소형풍력발전기 설치를 위해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사항임
- 본 사업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일대에 소형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결합한 'Smart-Hybrid System'을 구축하기 위한 1단계 사업으로서 다대생태문화공원 부지에 소형풍력발전 Test Bed(15KW급 풍력터빈 2대)를 설치하여 풍력자원 및 실제 발전효율을 검증하기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 사하구 · 사상구 일원
 - 지정일 : 1966.7.13.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소형풍력발전기 설치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525-1
 - 사업내용 : 다대로 일원에 소형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TEST BED
 - TEST용 15KW급 소형풍력발전기 2기 설치
 - 타워 높이 20m, 직경 84cm, 날개반경 8.3m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7.8.31.까지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라. 검토의견(***)**

- 신청 사업은 낙동강변 지정구역 내에 관람데크 및 탐조시설이 조성된 공원 부지 내에 다대로 소형풍력 용·복합 스마트그리드 단지 조성을 위한 실증 사업으로 소형 풍력발전기 2기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사업 시행에 따라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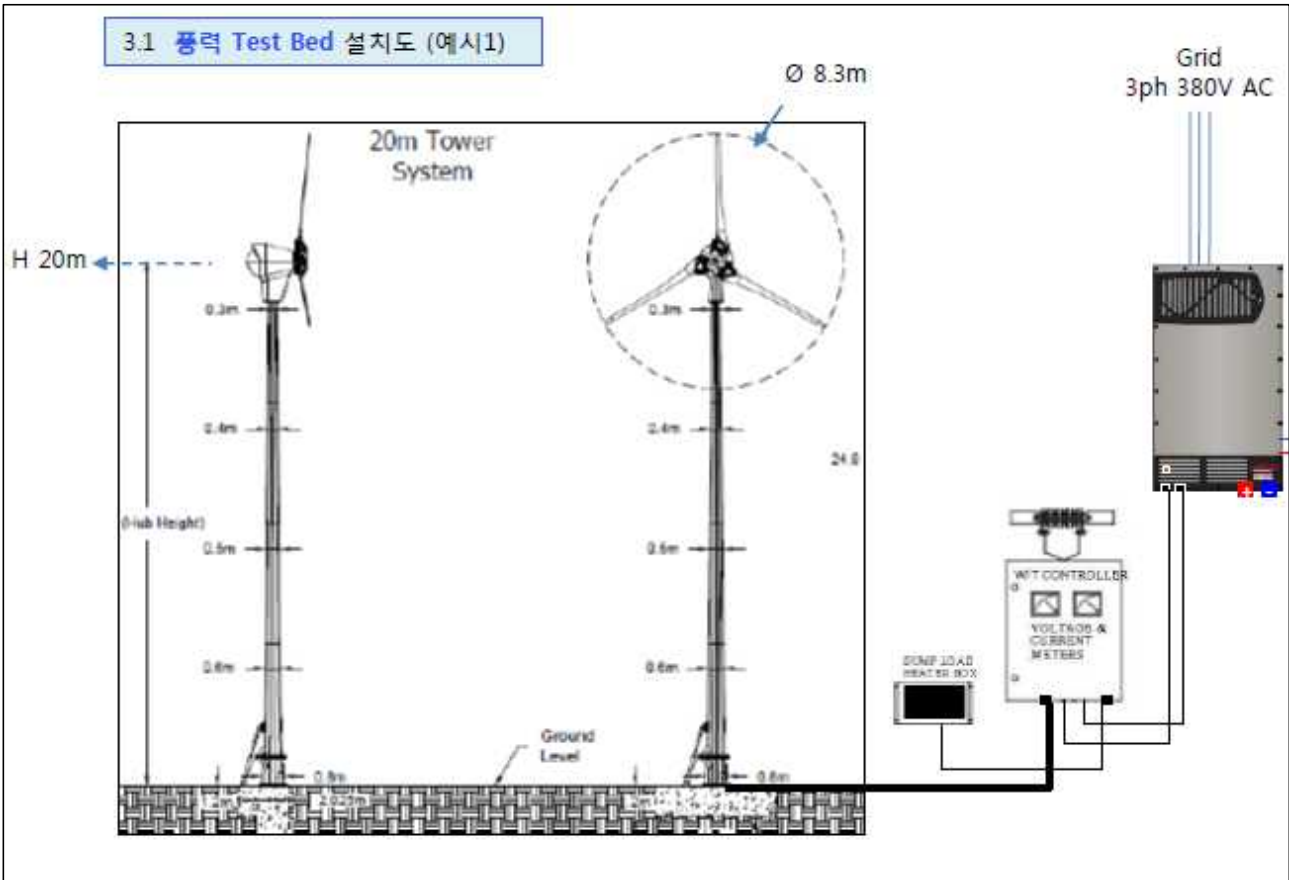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17.2.17.)**

-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문화재구역 내에 위치한 다대생태문화공원 부지에 다대로 일원 소형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TEST용 소형풍력발전기 (블레이드 포함 총 높이 24.9m) 2기를 설치하는 사업임. 신청사업이 성공리에 완료되면 향후 을숙도대교 남단에서 다대포 해수욕장 사이의 해변 4km구간에 풍력발전기 150기 추가설치가 예정되어 있음
- 사업신청지역은 철새의 주요 도래 및 번식지역인 맹금머리등(사주) 및 주변 해역 인근에 위치해 있어 풍력발전기의 설치 및 운영은 철새의 비행이동 및 서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풍력발전사업 선진국에서는 풍력발전단지의 입지선정에서 조류충돌 사고 예방차원에서 철새도래 및 번식지와 철새이동경로 상에 위치하는 지역은 제외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바. 의결사항

- 부결
 - 풍력발전기 설치 및 운영은 철새의 비행 이동 및 서식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부결 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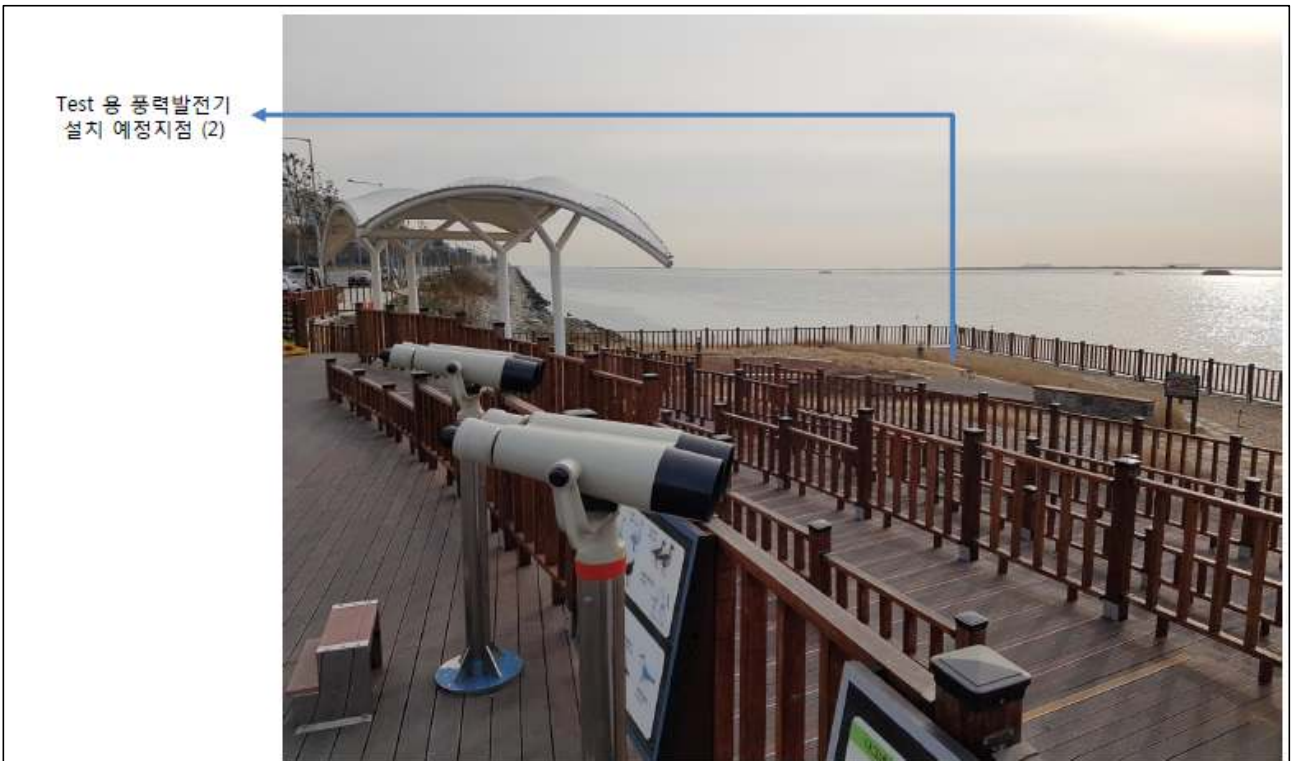
※ 참고자료(시설규격 및 구성도)



※ 참고자료(사업부지 상세위치도)



※ 참고자료(현황사진 및 설치예상도)





2.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주변 수상재난안전체험장 설치

가. 제안사항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수상재난안전체험장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주변에 부유식 수상재난안전체험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본 사업은 낙동강 철새 도래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에 위치한 ‘삼락생태공원’ 계류장 내에 수상안전교육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유식 수상구조물에서 안전체험을 실시하고 법률에 의해 의무화된 초등학교 생존수영 훈련장을 설치·운영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사하구·사상구 일원
 - 지정일 : 1966.7.13.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수상재난안전체험장 설치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29-59(삼락생태공원 내)
 - 사업내용 : 수상재난안전체험장 설치
 - 수상안전교육장 : 부유시설(바지선-길이 80m*폭 16m*높이 5m) 내 화재진압체험, 풍수해체험, 선박위기탈출체험, 화재탈출체험, 지진체험 등 재난안전교육 시설 설치
 - 생존수영체험장 : (가설)부유식 생존수영체험교육장 설치(50m*30m)
 - 주요체험내용 : 생존수영, 지진체험장, 안전교육장 등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7.4.30.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인접
 - *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1구역(개별 심의)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업은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주변에 조성되어 있는 삼락생태공원 요트계류장 내에 부유식 수상재난안전체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철새 도래·서식 등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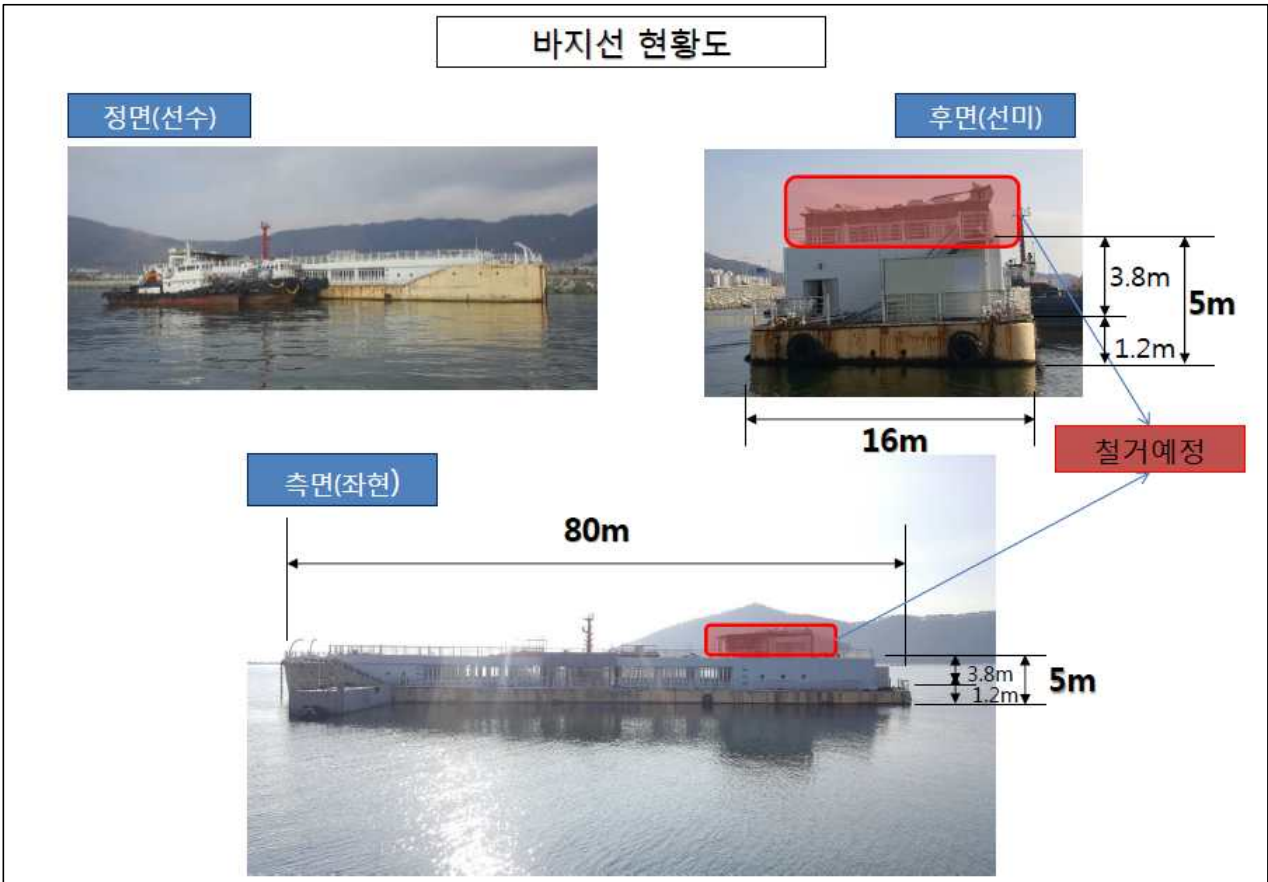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7.2.17.)

- 낙동강 삼락체육공원 계류장 내의 수상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체험을 통해 재난관리능력 및 안전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재난안전 교육관, 화재진압체험관, 비상탈출 체험관, 풍수해 체험관, 선박 위기탈출 체험관, 계곡 로프구조 체험관 등을 갖춘 키즈테마 안전교육체험관을 바지선 형태(80m*20m, 높이 5m)로 설치하고 인접하여 생존수영체험장(50m*30m)을 설치하는 사업임
- 체험관 시설물은 부유식으로 바지선 형태로 허용기준 1구역에 설치 예정이며, 시설물의 높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규모가 방대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바. 의결사항

- 보류
 - 시설 규모 축소, 수질오염 방지 대책, 이용 인원 등 세부운영 계획, 철새에 미치는 영향 저감방안 마련 제출 후 재검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보류 9명

※ 참고자료(설치예정시설물 현황)



생존수영체험장 현황도

진입 부교(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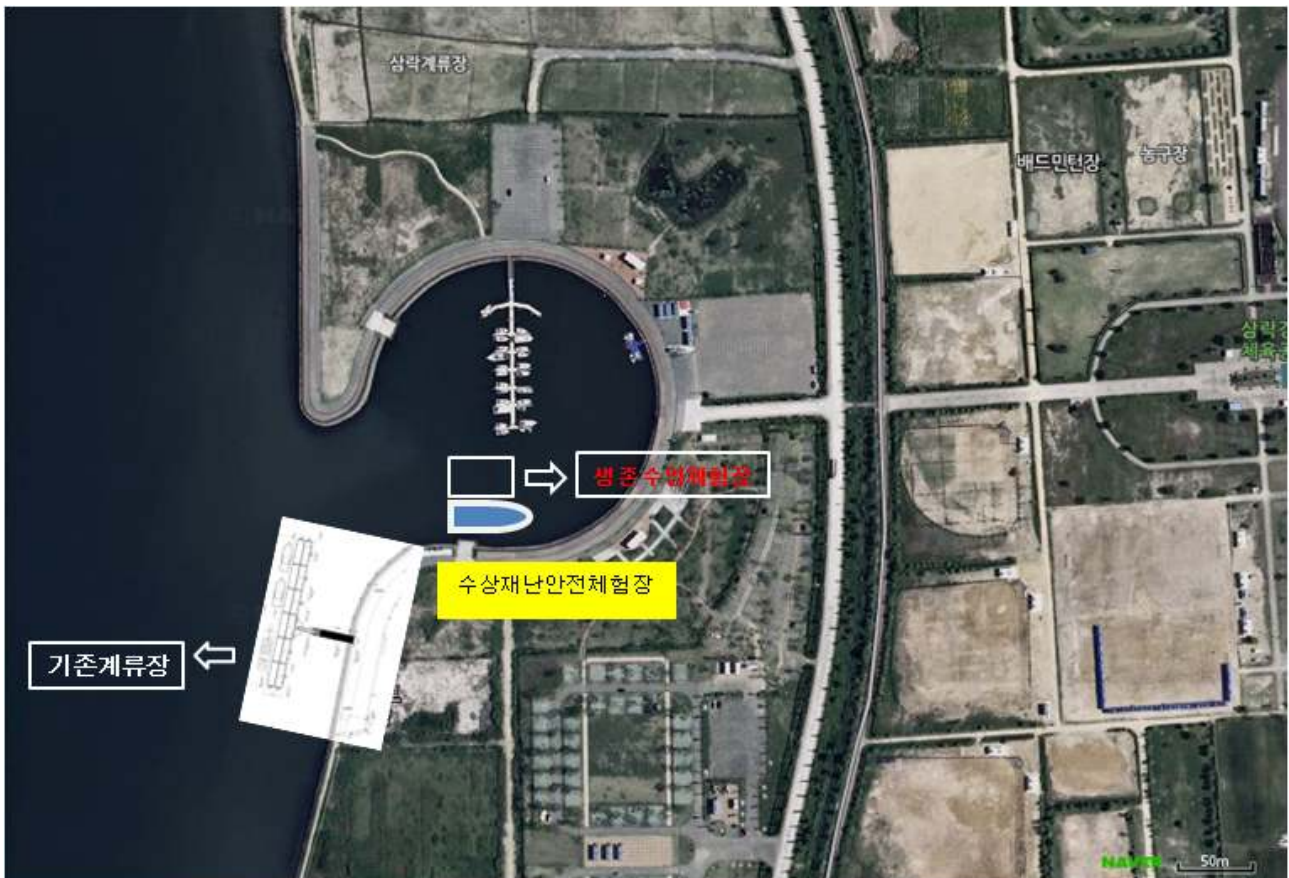


생존수영체험장(예시)



진입부교, 생존수영체험장 부유식이며, 언제든지 쉽게 이동 가능합니다.

※ 참고자료(배치계획도)



3.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내 삼락수상레포츠타운 구조정 운행

가. 제안사항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내 삼락수상레포츠타운 구조정 운영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내 삼락수상레포츠타운 구조정 운영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사항임
- 본 사업은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삼락생태공원 내에 조성된 삼락수상레포츠타운의 수상레저기구(카약, 카누, 요트 등) 이용 시 지도관리 및 긴급구조를 위한 구조정(모터보트) 운행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사하구·사상구 일원
 - 지정일 : 1966.7.13.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삼락수상레포츠타운 구조정 운행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29-76(삼락생태공원 내)
 - 사업내용 : 낙동강 본류 및 샛강 구조정(모터보트) 각 1대 운행
 - 필요성 : 카약 등 무동력 수상레포츠 체험 및 생태탐방 시민의 안전을 위한 구조정 운행 필요
 - 구조정 내용
 - 기구의 종류 : 모터보트(최대출력 90마력)
 - 승선인원 : 6명

- 보트제원 : 6.2(길이)*2.4(너비)*0.65(깊이)
 - 구조정 운행 : 시민들의 안전 및 카약, 카누, 요트 등의 이동 등을 위한 최소한의 동력 운행
 - 환경저감방안
 - 겨울철새의 주 도래시기인 매년 11월~3월까지 운영 중단으로 철새도래지 보호
 - 굉음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엔진시설 등에 방음장비 설치
 -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동력 운행 및 수시 점검
 - 사업기간 : 2017.4.1. ~ 계속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외(1구역)

라. 검토의견(*****)

- 신청 사업은 부산시 사상구 삼락동 삼락생태공원 앞 낙동강 본류 및 허용기준 제1구역인 공원 내 셋강에서 삼락수상레포츠타운에서 운영하는 카약 등 체험활동 참가자와 탐방객의 안전 및 관리를 위한 구조정 2대를 운행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사업 시행에 따라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17.2.17.)

-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삼락생태공원의 수상레포츠타운 수상레저기구(카약, 카누, 요트 등) 지도관리 및 긴급구조를 위한 구조정(모터보트, 90마력 6인승) 2척을 각기 낙동강본류와 셋강에서 운행하고자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한 건임
- 낙동강본류(문화재구역)에는 동력 생태탐방선이, 셋강(허용기준 1구역)에는 무동력 카약이 현상변경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어 구조정의 운행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동력선인 모터보트의 잦은 운행은 과도발생에 따른 낙동강 하안침식과 하안습지 번식조류에 미치는 악영향, 유류오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긴급구조 상황 발생시에만 운행하도록 제한하고 운행일지(운행일시 및 운행사유 등을 기재)를 작성 보고하도록 하고 운행기간은 금년 10월까지로 제한하는 조건부로 허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긴급구조 상황 발생시에만 운영토록하고 허가기간은 2017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

까지로 하며, 운행일지(운행일시, 사유 등)를 문화재청에 제출토록 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조건부 가결 9명

※ 참고자료(사업위치도)



※ 참고자료(사업위치도)

	
<p>삼락수상레포츠타운</p>	<p>셋 강</p>

※ 참고자료(사업계획서)



삼락수상레포트타운 운행계획서



부 산 광 역 시
(낙동강관리본부)

삼락수상레포츠타운 구조정 운행계획서

□ 현 황

- 위 치 : 부산시 사상구 삼락동 29-76번지(삼락생태공원내)
- 비닐하우스등 경작지로 이용되던 곳을 4대강살리기 사업시 이를 정비하고 철새먹이터 및 샛강조성
- 봄~가을까지는 꽃단지조성 등으로 시민들의 출입이 가능하나, 겨울철(11월~2월)에는 철새보호를 위해 철새먹이터 및 샛강등의 출입을 제한하고, 철새먹이터에는 보리식재, 볍씨제공등으로 겨울철새의 안정적인 서식지로 유지관리하고 있음
- 2013년 삼락둔치(신청지역) 주변에서 관찰된 조류는 총72종 9,000여개체로 대부분 겨울철새임
- 여름철 낙동강하구 전체 조류는 44종 2,400여개체이며, 신청지역 주변은 14종 261개체로 주요 발견종은 개개비146개체, 왜가리20개체임

□ 필요성

- 부산에는 시민을 위한 샛강 탐방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지역이 없어 4대강살리기사업시 인공으로 조성된 삼락샛강이 체험장소로 적합하여 수상시설 설치요청이 많았음
- 샛강 생태체험 및 현장환경학습용인 무동력 카약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류시설(폰툰) 설치 허가를 받았으며 청소년 및 가족 단위 위주의 샛강탐방 프로그램 운영중임
-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낙동강하구 생태공원 조성 목표로 겨울철 철새도래기간에는 철새보호를 위해 출입을 제한하고, 철새 비도래기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낙동강하구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환경보전의식 고취

허가신청내용

- 신청규모 : 낙동강본류 및 샛강 각 1대 운행
- 신청인 :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장
- 위치 : 부산시 사상구 삼락동 29-61번지(위치도 별첨)
- 신청기간 : 2017.04.01. ~ 영구

허가운영계획

- 운영계획
 - ▷ 기간 : 4월 ~ 10월(11월~3월 운행중단)
 - ▷ 운영 : 민간위탁으로 운영
 - ▷ 방법 : 시민대상 무동력 카약투어 및 생태탐방에 따른 구조정 운행
 - ▷ 내용 : 카약 등 생태탐방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구조정 운행

구조정현황

- 구조정 내용
 - ▷ 기구의종류 : 모터보트
 - ▷ 최대출력 : 90마력
 - ▷ 승선인원 : 6명
 - ▷ 보트제원 : 6.2(길이)*2.4(너비)*0.65(깊이)
- 구조정 운행
 - ▷ 시민들이 안전 및 카약,카누,요트 등의 이동등을 위한 최소한의 동력운행

환경 저감방안

- 겨울철새의 주 도래시기인 매년 11월~3월까지 운영 중단으로 철새도래지 보호
- 굉음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엔진시설등에 방음 장비 설치
-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동력 운행 및 수시 점검

□ 전경사진



사진설명

삼락수상레포트타운 전경사진



사진설명

삼락수상레포트타운(갯강) 전경사진

4.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 내 호안도로 개설

가. 제안사항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 내 호안도로 개설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 내 호안도로를 개설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0호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
 - 소재지 :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산110번지 등
 - 지정일 : 1962.12.07
- (3) 신청내용
 - 사업명 : 호안도로 개설
 - 사업위치 :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산110번지 주변 해역부
 - 사업내용
 - 호안도로 개설 L=150m, B=3.0m, A=450.0m²
(보조기층 T=15cm, 와이어매쉬 100×100, 콘크리트 포장 T=20cm)
 - 호안도로 대기차선 2개소, A=66.0m²(1개소당 B=3.0m, A=66.0m²)
 - 매트리스 개비온 설치 156m³(0.5m(H)1.5m(B)×156m(L))
 - 전석쌓기 H=1.3m, B=0.8m, L=156m(시공기울기 1 : 0.5)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8.06.31.까지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라. 검토의견(*****)

- 신청 사업은 예송리 상록수림 내 해역부에 상록수림 구역 지반침식 방지 및 화재 등 재난발생시 신속 대응을 위해 호안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재 및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서면검토 의견)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7.1.31)

- 예송리 상록수림은 숲과 바다가 함께 연결된 생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다와 연결한 상록수림에 호안도로(길이 150m, 폭 3m)를 신설하는 것은 상록수림의 생태계를 바다에서 단절시킴을 의미함
- 호안도로의 개설은 상록수림 주변의 자연환경요소(생육환경, 지형 및 지질, 수계 등)를 저해할 우려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7.2.1)

- 본 사업으로 인공적인 호안도로가 개설된다면 아름다운 상록수림과 둥근 검은 자갈이 있는 해안 경관을 심각히 훼손할 것으로 판단됨
- 상록수림 구역 지반침식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상록수림 구역의 지반침식현상에 대한 면밀한 조사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고, 상록수림의 생육 증진, 자연경관 보호, 둥근 자갈 경관의 보호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하는 종합 계획이 필요하며, 이 경우에도 호안도로의 개설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부결
 -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은 숲과 바다가 함께 연결된 생태계로 호안도로가 개설되면 상록수림의 생태계를 단절시키며 상록수림 주변의 자연환경 요소(생육환경, 지형, 수계 등) 및 해안 경관 훼손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부결 9명

사업 계획서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보길 예송리 호안도로 개설

나. 사업목적 : 예송리 상록수림 주변 호안도로 개설을 통하여 파랑에 의한 상록수림 구역 지반침식을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고자 함

다. 사업시행자 :

1) 주소 : 전남 완도군 완도읍 *****

2) 성명 : *****

2. 사업장 위치 및 규모

가. 위치 : 전남 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산111번지 지선 (공유수면)

나. 사업량 : 도로개설 L=150m, B=3.0m (A = 450.0㎡)

다. 사업비 : 96,500,000원

라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8. 06. 31 .

지적위치도 및 현장전경



5. 「제주 천제연 난대림」 주변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 천제연 난대림」 주변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연립)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천제연 난대림」 등 주변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연립)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2015년도 제10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15.10.30) 및 2017년도 제1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17.01.25) 시 2차례 부결된 사항으로 신청인이 사업규모를 조정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 2015년 제10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15.10.30) 시 '건물 신축 시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큼' 사유로 부결됨.
- 2017년 제1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17.01.25) 시 '천제연 난대림 1구역에 4층 규모의 건축물이 신축되면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큼' 사유로 부결됨.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378호 제주 천제연 난대림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785-1번지

○ 지정일 : 1993.8.19

(3) 신청내용

○ 사업명 :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연립) 신축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1544-1, 1544-4, 2774-47번지

○ 사업내용

- 전체 사업내용

구분	1차 신청(2015.10.30/부결)			2차 신청(2017.1.25/부결)		금회신청		비고
	다가구 주택(1)	다가구 주택(2)	다가구 주택(3)	A동	B동	A동	B동	
대지면적	326㎡	414㎡	466㎡	2,337㎡		좌동		-
건축면적	154.18㎡	154.18㎡	154.18㎡	323.27㎡	323.27㎡	좌동	좌동	-
연면적	425.61㎡	425.61㎡	425.61㎡	975.57㎡	975.57㎡	864.66㎡	864.66㎡	△ 110.91㎡ (1동당)
구조	철근 콘크리트 조	철근 콘크리트 조	철근 콘크리트 조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최고 높이	13.95m (옥탑높이 2.25m 포함, 지상 4층)	13.95m (옥탑높이 2.25m 포함, 지상 4층)	13.95m (옥탑높이 2.25m 포함, 지상 4층)	14.85m 지상 4층	14.85m 지상 4층	14.85m 지상 4층	14.85m 지상 4층	1구역내는 3층으로 조정

- 허용기준 구역별 세부 건축내용

(단위 : ㎡)

구분	2차 신청(2017.1.25/부결)			금회신청			증감		
	바닥 면적	1구역 면적	3구역 면적	바닥 면적	1구역 면적	3구역 면적	바닥 면적	1구역 면적	3구역 면적
A동 1층	223.01	30.16	192.85	223.02	30.16	192.86	0.01	-	0.01
A동 2층	237.42	30.16	207.26	230.25	30.16	200.09	△7.17	-	△7.17
A동 3층	257.57	31.75	225.82	252.93	31.75	221.18	△4.64	-	△4.64
A동 4층	257.57	31.75	225.82	158.46	-	158.46	△99.11	△31.75	△67.36
계	975.57	123.82	851.75	864.66	92.07	772.59	△110.91	△31.75	△79.16
B동 1층	223.01	21.76	201.25	223.02	21.76	201.26	0.01	-	0.01
B동 2층	237.42	21.76	215.66	230.25	21.76	208.49	△7.17	-	△7.17
B동 3층	257.57	23.14	234.43	252.93	23.14	229.79	△4.64	-	△4.64
B동 4층	257.57	23.14	234.43	158.46	-	158.46	△99.11	△23.14	△79.97
계	975.57	89.80	885.77	864.66	66.66	798.00	△110.91	△23.14	△87.77
합계	1,951.14	213.62	1,737.52	1,729.32	158.73	1,570.59	△221.82	△54.89	△166.93

※ 1구역 건축 비율

- 2017년 제1차 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 총 연면적 1,951.14㎡ 중 1구역에 연면적 213.62㎡로 전체 면적의 10.94% 해당
- 금회 신청 시 : 총 연면적 1,729.32㎡ 중 1구역에 연면적 158.73㎡로 전체 면적에 9.17% 해당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8.03.31.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5m 이격

*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 : 개별심의

3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되,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은 개별 심의함

라. 검토의견(*****)

- 신청 사업은 제주 천제연 난대림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5m 이격된 1구역에 4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2동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금회 신청사항은 2017년 제1차 천연기념물분과 위원회 신청과 비교하여 1구역 내 건축물을 당초 4층 (14.85m)에서 3층(11.55m)으로 건축물 높이 및 건축면적을 축소 조정 하였고, 대부분의 건축물이 3구역(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에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서면검토 및 현지조사 의견)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7.2.15)

- 2017년 제1차 문화재위원회 신청 시와 비교하여 1구역 내 일부 포함되는 건축물의 높이를 낮춰 재신청한 건으로 천제연 난대림의 경관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건축면적의 90% 이상이 도시계획조례로 처리되는 3구역에 있다는 점과 그간 부결사항을 고려하여 1구역에 포함된 건축물의 높이 및 건축면적을 축소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됨

<2017년 제1차 문화재위원회 현지검토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1.11)

- 2015년 1차 신청에 비해 1구역에서의 건축규모는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인 건축규모(건축면적, 연면적, 최고높이)가 오히려 증대하여 경관적으로 문화재(천연기념물)와 조화롭지 못할 우려가 있음

바. 의결사항

- 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가결 9명

6.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내 이동식 카약, 테우 탑승장 설치

가. 제안사항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내 이동식 카약, 테우 탑승장 설치를 위해 국가 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내 해양 투명 카약, 테우 체험사업을 하고자 이동식 카약, 테우 탑승장 설치를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20호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리 1번지 등
 - 지정일 : 2000.07.18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이동식 카약, 테우 탑승장 설치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리 399-8번지 전방 공유수면
 - 사업내용 : 탑승장(푼툰) 설치
 - 탑승장 전체 설치면적 : 100m²
 - 푼툰부표 설치갯수 : 총400개(50cm×50cm)
 - 테우 운행을 위한 로프설치 : 탑승장에서 공유수면으로 20mm 2줄 100m 설치, 부표 2개 및 부표 고정용 닻 2개 설치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2.02.28.까지(5년간)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라. 검토의견 (*****)

-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내 공유수면에 해양 투명 카약, 테우 체험사업을 하고자 이동식 카약, 테우 탑승장 설치를 신청한 사항으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2.15)

-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내 공유수면에 카약 및 테우 체험 영업을 위한 탑승장 설치를 신청한 건으로 해당지역은 천연보호구역이자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곳임
-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내 카약 및 테우 체험 영업은 이용객 증가로 인한 각종 훼손 및 쓰레기 증가 등 문화재 보존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으며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부결
 -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공유수면 내 카약 및 테우 체험장 설치·운영은 천연보호 구역이자 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의 경관 저해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부결 9명

7.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주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본 사업은 2016년 제6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16.06.22) 시 '신청지는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서측의 주요 조망지역으로 천연보호구역의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의 사유로 부결되었던 사업으로 신청인이 지붕 형태를 변경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20호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1번지 등
 - 지정일 : 2000.7.18
- (3) 신청내용
 - 사업명 : 근린생활시설 신축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139-3, 139-4
 - 사업내용

구분	1차 신청(2016.06.22/부결)	금회 신청	비고
대지면적	899㎡	899㎡	-
건축면적	535.93㎡	535.93㎡	-
연면적	2,402.89㎡	2,406.87㎡	증) 3.98㎡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
규모	지하1층~지상4층	지하 1층~지상4층	-

구분	1차 신청(2016.06.22/부결)			금회 신청			비고
	구분	면적	용도	구분	면적	용도	-
	지하 1	734.18㎡	주차장	지하 1	735.95㎡	주차장	증) 1.77㎡
	지상 1	429.76㎡	1종 근생	지상 1	430.84㎡	1종 근생	증) 1.08㎡
	지상 2	457.44㎡	2종 근생	지상 2	459.29㎡	2종 근생	증) 1.85㎡
	지상 3	452.10㎡	2종근생/단 독주택	지상 3	453.94㎡	2종근생/단 독주택	증) 1.84㎡
	지상 4	329.41㎡	2종 근생	지상 4	326.85㎡	2종 근생	감) 2.56㎡
최고높이	15.76m			15.95m			증) 0.19m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7.11.31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42m 이격

* 현상변경 허용기준 : 2구역(경사지붕, 건축물 최고높이 16m 이하)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업은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으로부터 42m 이격된 2구역에 4층 규모 (최고높이 15.95m)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2016년 제6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16.6.22)시 부결되었으나 금회 지붕의 형태를 변경하여 재신청한 건임
- 신청지가 성산일출봉 서측의 주요 조망지역이며, 문화재 주변 경관 보존관리를 위해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의 2015년 허용기준 조정 시 지붕형태를 경사 지붕으로 변경한 점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2.15)

- 신청인이 2016년 제6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시 부결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지붕형태를 변경하여 재신청한 건이나 하나의 건물에 적용될 수 있는 경사지붕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1차 신청 시와 비교하여 건축 규모 등의 변동이 미미하여 경관 훼손이 우려됨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2015.3.31)

구분	허용기준(변경 전)	허용기준 조정('15.3.31)	
		평지붕	경사지붕 (경사가 10:3 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건축물 개보수 허용 ○ 도시공원의 경우 도시공원법 적용하되, 도시공원 내 시설물 등 설치공사 시 문화재영향검토를 받아 시행 	○ 개별 심의	
2구역	○ 건축물 3층 이하 (평스라브 12m, 경사지붕의 경우 16m 이하)	-	○ 건축물 최고높이 16m 이하
3구역	○ 건축물 4층 이하 (평스라브 16m, 경사지붕의 경우 20m이하)	-	○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4구역	○ 건축물 5층 이하 (평스라브 20m, 경사지붕의 경우 24m이하)	-	○ 건축물 최고높이 24m 이하
5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 적용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신축시 경사지붕을 권고 ○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의 형질변경은 문화재보호법 적용 ○ 생활하수발생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거 연결시 허용 ○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 폐기물 및 폐수배출 시설은 문화재보호법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함 ○ 생활하수발생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거 연결 시 허용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바. 의결사항

○ 부결

- 신청지는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서측의 주요 조망지역으로 지붕 형태를 일부 변경하였으나 천연보호구역의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부결 9명

8. 「마라도천연보호구역」 내외 CCTV 및 보안등 설치

가. 제안사항

「마라도천연보호구역」 내외 CCTV 및 보안등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마라도천연보호구역」 내외 CCTV 및 보안등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23호 「마라도천연보호구역」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580 등
 - 지정일 : 2000.07.18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마라도 일원 보안용 CCTV 및 보안등 설치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722 등
 - 사업내용 : CCTV 및 보안등 설치

구분	당초신청			현지조사 후 변경 신청			비고
	CCTV	보안등		CCTV 및 보안등	보안등		
		가로등	석등		가로등	석등	
설치 개수	7	7	13	6	-	11	- CCTV △1 (규격 축소) - 가로등은 CCTV와 일체로 설치 - 석등 △2
규격	폴대 H=5.0m CCTV 설치 CCTV 암대 2m	폴대 H=4.0m	H=400mm	폴대 H=4.0m CCTV 암대 1.3m	별도 폴대 없이 CCTV 폴대에 같이 설치	H=400m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7.03.31까지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외

라. 검토의견 (***)**

- 마라도천연보호구역 내외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CCTV 및 보안등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고정시설물이 설치된다는 점에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2.14)

- 마라도천연보호구역 내외 CCTV 및 보안등을 설치하기 위해 신청된 건으로 주민 및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인위적인 공작물 설치는 문화재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설치 규모, 위치 등을 재검토하여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석등 설치는 문화재 경관과 어울리도록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조건부 가결 9명

9. 「청원 공북리 음나무」 등 천연기념물 명칭 및 관리단체 변경

가. 제안사항

청주시 소재 천연기념물 「청원 공북리 음나무」 및 「청원 연제리 모과나무」의 지정명칭 및 관리단체 변경을 위해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청주시 소재 천연기념물 「청원 공북리 음나무」 및 「청원 연제리 모과나무」의 지정 명칭 및 관리단체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6년 제12차 천연기념물분과 위원회('16.12.28.)에서 검토 후 변경 예고를 거쳐 부의하는 사항임
 - 명칭 및 관리단체 변경 예고일 : '17.1.12.
 - 명칭 및 관리단체 변경 예고기간 : '17.1.12.~2.10.
 - 예고 결과 : 제출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305호 「청원 공북리 음나무」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공북리 318-2번지
 - 지정일 : 1982.11.09
- 천연기념물 제522호 「청원 연제리 모과나무」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47번지
 - 지정일 : 2011.1.13

(3) 신청내용

- 신청명 : 「청원 공북리 음나무(천연기념물 제305호)」 및 「청원 연제리 모과나무(천연기념물 제522호)」의 지정명칭 및 관리단체 변경
- 신청내용 : 천연기념물 명칭 및 관리단체 변경

구분	당초	변경
천연기념물 명칭 변경	청원 공북리 읍나무 (천연기념물 제305호)	청주 공북리 읍나무 (천연기념물 제305호)
	청원 연제리 모과나무 (천연기념물 제522호)	청주 연제리 모과나무 (천연기념물 제522호)
관리단체 명칭 변경	청원군	청주시

라. 검토의견 (*****)

- 2014년 7월 1일자로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구역이 청주시로 통합됨에 따라 현재 「청원 공북리 읍나무」와 「청원 연제리 모과나무」의 문화재 명칭 및 관리 단체를 청주시로 변경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청주시 청원구라는 행정구역이 있으나 천연기념물(청원 공북리 읍나무, 청원 연제리 모과나무)이 청주시 흥덕구에 소재하고 있어 현재대로 ‘청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일반인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문화재 명칭과 관리단체를 신청내용대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가결 9명

10. 「거창 수승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거창 수승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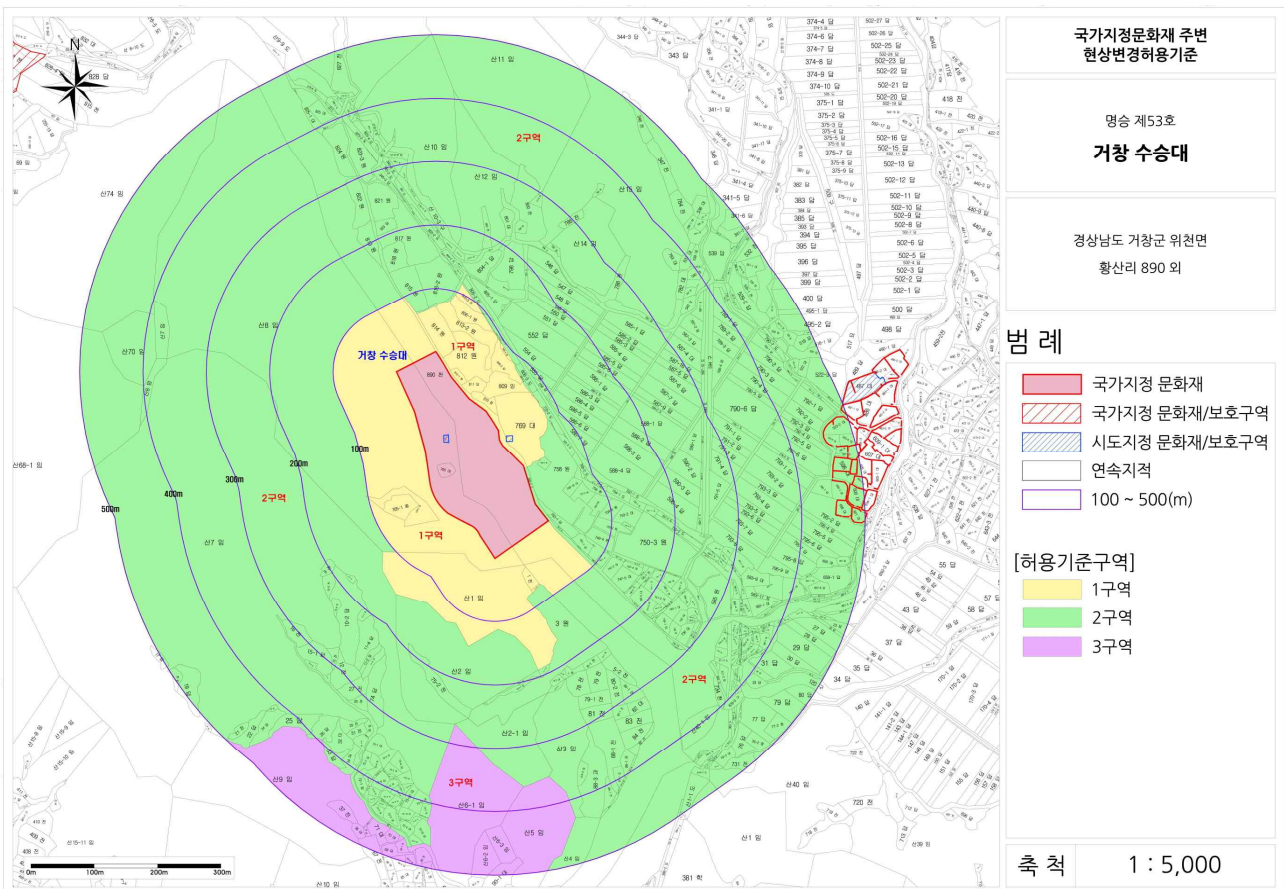
- “2017년도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합리적 조정계획”에 따라 「거창 수승대」의 허용기준 조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명승 제53호 「거창 수승대」
 - 소재지 :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890 번지 일원
 - 지정일 : 2008. 12. 26.
- (3) 신청내용 : 「거창 수승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 슬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	
2구역	○ 거창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3구역	○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제205호 「거창 동계 종택」) 허용 기준 준용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 ○ 2구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 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와 최고높이 30m 이상(시설물, 구조물 등 포함) 건물은 개별 심의
-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의 지역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 건축물 또는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구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구역 기준 적용(예를 들어 1구역과 2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심의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



라. 검토의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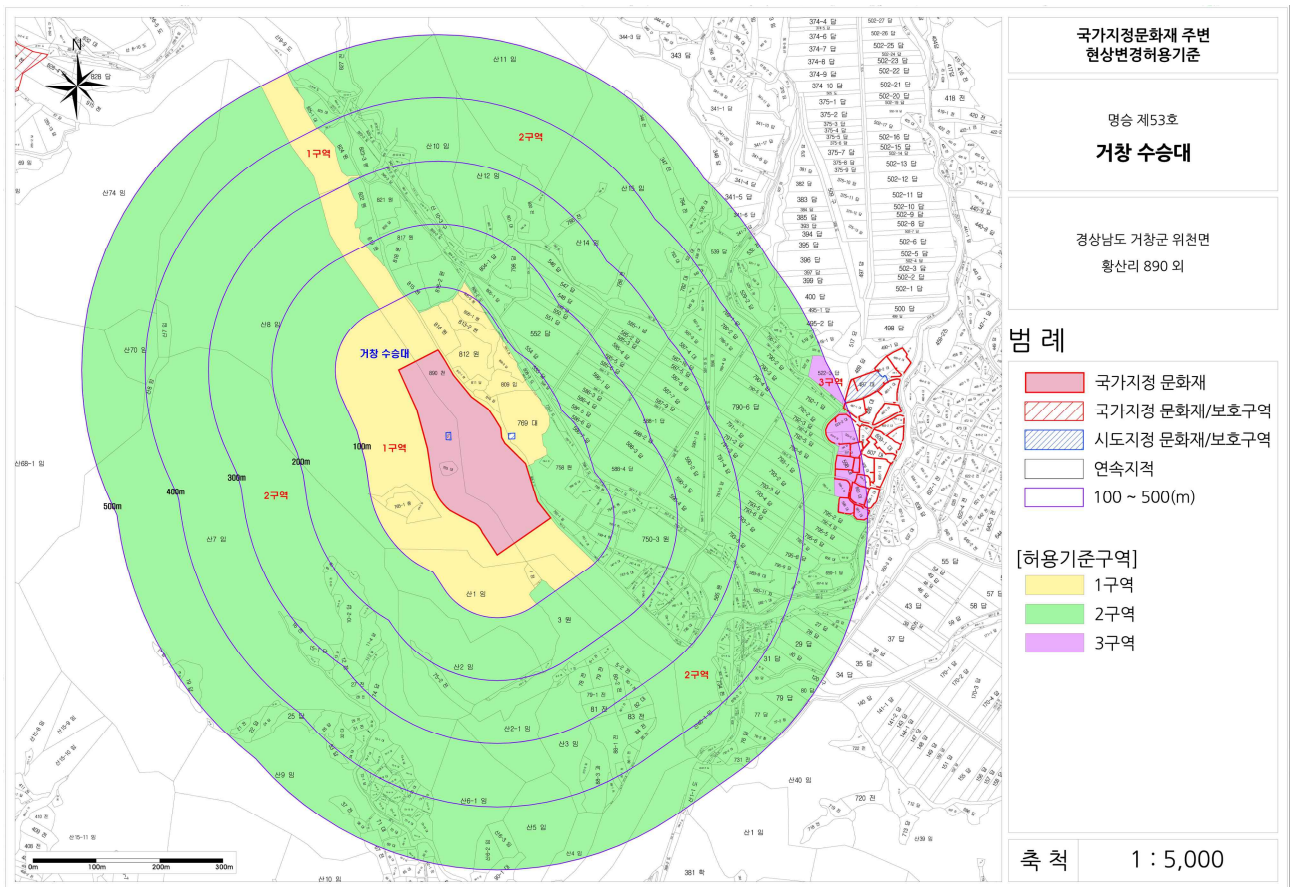
- 명승 제53호 「거창 수승대」로부터 동쪽으로 500m 떨어진 곳에는 등록문화재 제259호 「거창 황산마을 옛담장」, 경남 민속문화재 제17호 「거창 황산리 신씨고가」가 있고, 남쪽으로 500m 떨어진 곳에는 중요민속문화재 제205호 「거창 동계 종택」이 위치함
- 등록문화재(거창 황산마을 옛담장)는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없으나, 경상남도 지정문화재(거창 황산리 신씨고가)와 겹치는 구역은 도지정문화재의 허용기준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거창 황산리 신씨고가(민속문화재 제17호)의 허용기준
황산리 522-3번지	기존건물 범위 내 개축, 증축 허용 (증축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 10% 이내)
황산리 598번지 주변	평지붕(도문화재위원 개별심의), 경사지붕(7.5m 이하)

- 중요민속문화재(거창 동계 종택)와 중첩되는 구역은 ‘거창군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는 구역으로, 별도의 구역으로 설정하는 것보다 2구역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지조사 결과 수승대의 하천 상류 유역은 수승대와 연계된 암각 등이 분포되어 있으므로 1구역(개별심의)으로 변경하고, 하류 유역은 이미 관광지로 개발되어 있으므로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0m까지만 1구역(개별심의)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 슬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	
2구역	○ 거창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3구역	○ 경남 민속문화재 제17호 「거창 황산리 신씨고가」 허용기준에 따름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 ○ 2구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 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와 최고높이 30m 이상(시설물, 구조물 등 포함) 건물은 개별 심의	

-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의 지역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 건축물 또는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구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구역 기준 적용(예를 들어 1구역과 2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심의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전문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2.13.)

- 거창군에서 신청한 허용기준(안)은 지정구역 경계선에서 100m 이내 구역을 한정하여 북·서·남쪽의 임야(원각사 포함)와 북동쪽 관리사무동~구원서원까지를 허용기준 1구역(개별심의)으로 마련하고 그 외 지역은 2구역(도시계획조례)으로 설정하였음
- 현지조사 결과 문화재구역 내 구연동십구경(요수정, 옥기암, 연반석, 세필짐, 구암)과 연계된 남정, 자암 그리고 무오 등의 암각이 오토캠핑장 아래 하천에서 발견됨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음
- 거창 수송대 지정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00m까지 하천 상류 유역은 1구역(개별심의)으로 확대하여 하천에 산재되어 있는 암석 각자 보존이 필요하나, 하류측은 이미 관광지화되어 물놀이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자체안대로 100m까지만 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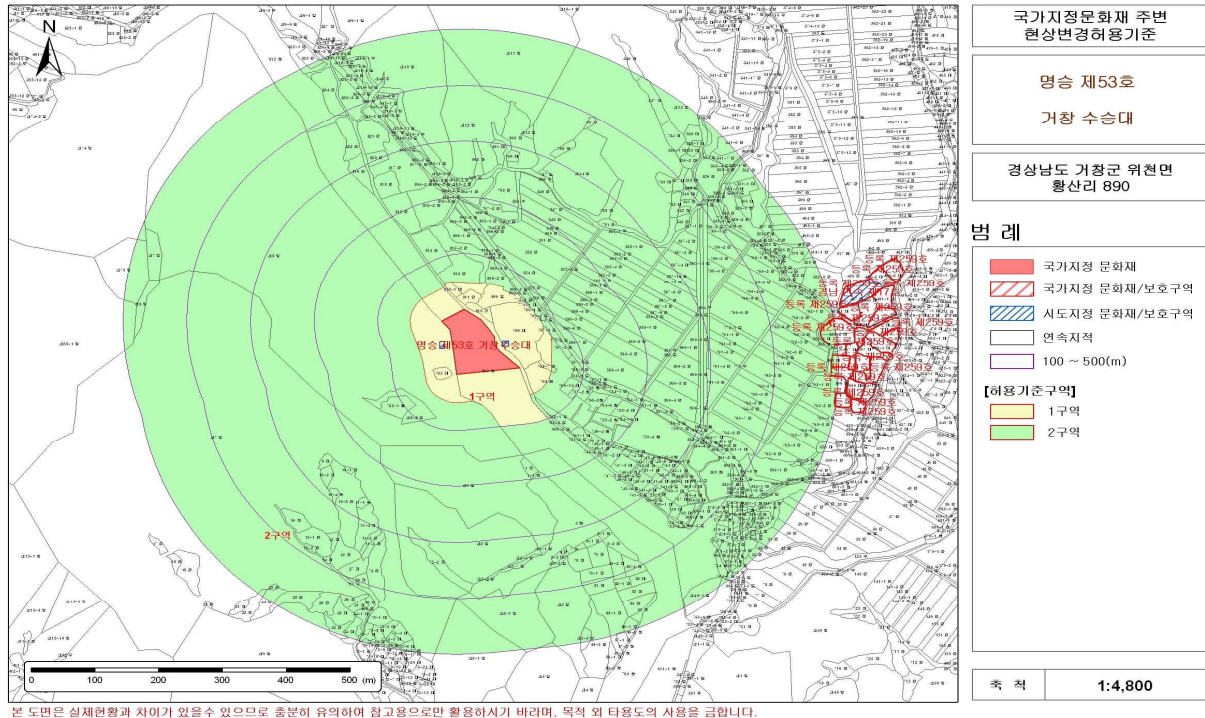
(*** 의견 / 2017.1.26.)

- 문화재구역의 확대로 문화재로부터 조망권에 포함되는 지역을 1구역으로 설정하여 1구역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기존 허용기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던 지역인 문화재로부터 남측 방향의 약 250m 이격된 거창군 위천면 강천리 3번지 주변 지역은 거창 수송대가 관광지로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이 일대는 미개발 상태인 사항과 문화재와의 이격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개발의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해 당초 2구역(거창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에서 1구역(개별 심의)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 그리고, 문화재로부터 남측 방향의 약 300m 이격된 거창군 위천면 강천리 산6-1번지 주변 지역은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제205호 「거창 동계 종택」) 허용기준의 1구역(보존지역), 2구역(평지붕 5m 이하, 경사지붕 7.5m 이하), 3구역(평지붕 8m 이하, 경사지붕 12m 이하)의 직접적인 규제 영향권에 해당하는 지역이 일부 분포하고 있으나, 기존 허용기준에는 2구역(거창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에 대해서는 「거창 동계 종택」의 허용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여 문화재별 허용기준 간 불일치를 조정하여 혼선을 방지하였음
- 또한, 황산마을은 「거창 황산리 신씨고가」(경남 민속문화재 제17호) 주변 허용기준을 따르도록 하였음

바. 허용기준 기고시 현황

- 명승 제53호 「거창 수승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2010. 12. 1.)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기존 규모 개·재축 허용	
제2구역	○ 거창군 도시계획 등 관련법에 따름	



- * 허용기준('10.12.1) 마련 후 문화재구역이 확대 지정('12.2.8)하였으나, 그에 따른 허용기준의 변경 조정은 없었음

사.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거창군의 신청안에서 하천 상류 유역을 1구역으로 조정하고 동쪽 450m지역은 시도민속 문화재 제17호 거창 황산리 신씨고가의 허용기준을 따르도록 조정한 문화재청의 조정안으로 시행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조건부 가결 9명

11. 「거창 용암정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거창 용암정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거창 용암정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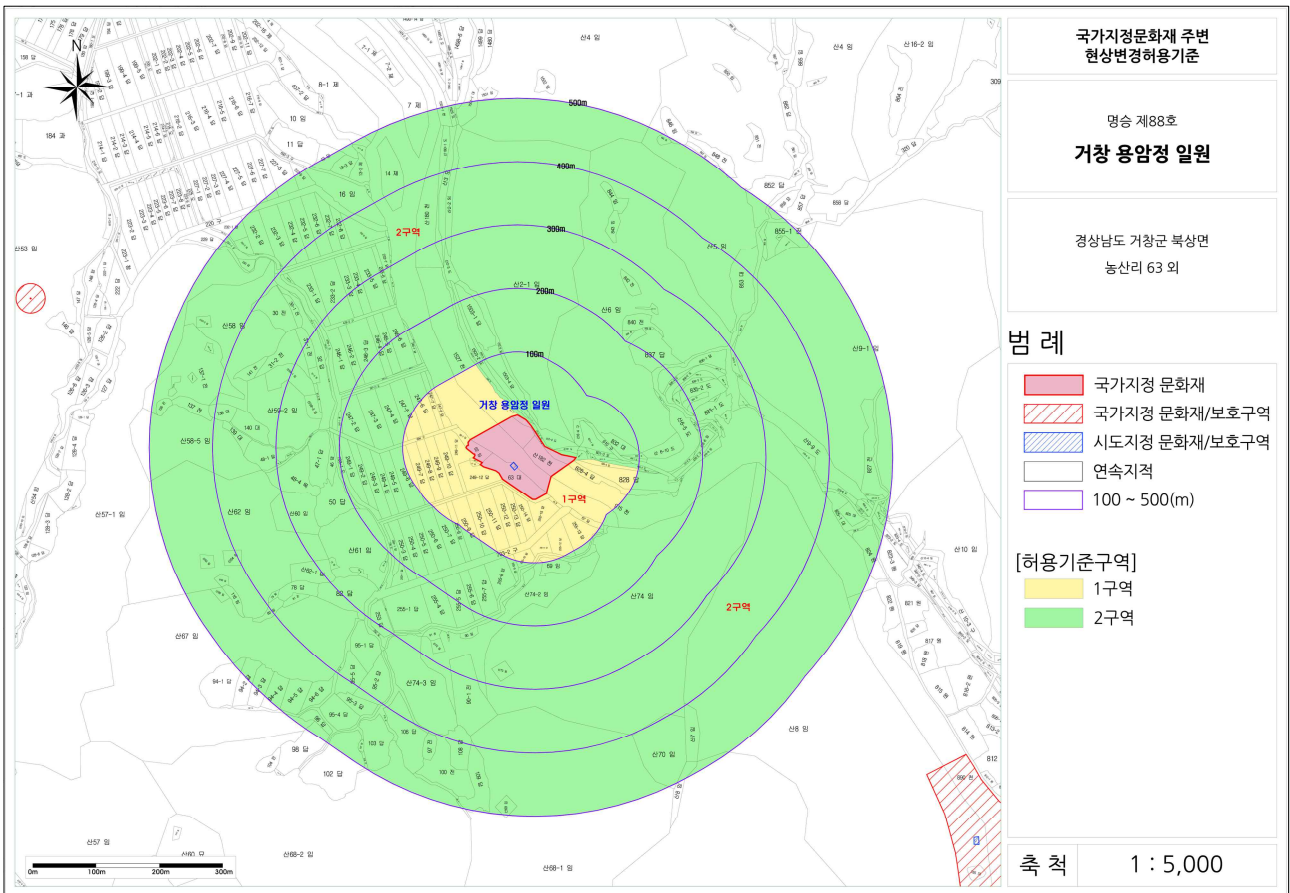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명승 제88호 「거창 용암정 일원」
 - 소재지 :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농산리 63 일원
 - 지정일 : 2012. 4. 10.
- (3) 신청내용 : 「거창 용암정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 슬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	
2구역	○ 거창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 ○ 2구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 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와 최고높이 30m 이상(시설물, 구조물 등 포함) 건물은 개별 심의 ○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의 지역에 위험물 저장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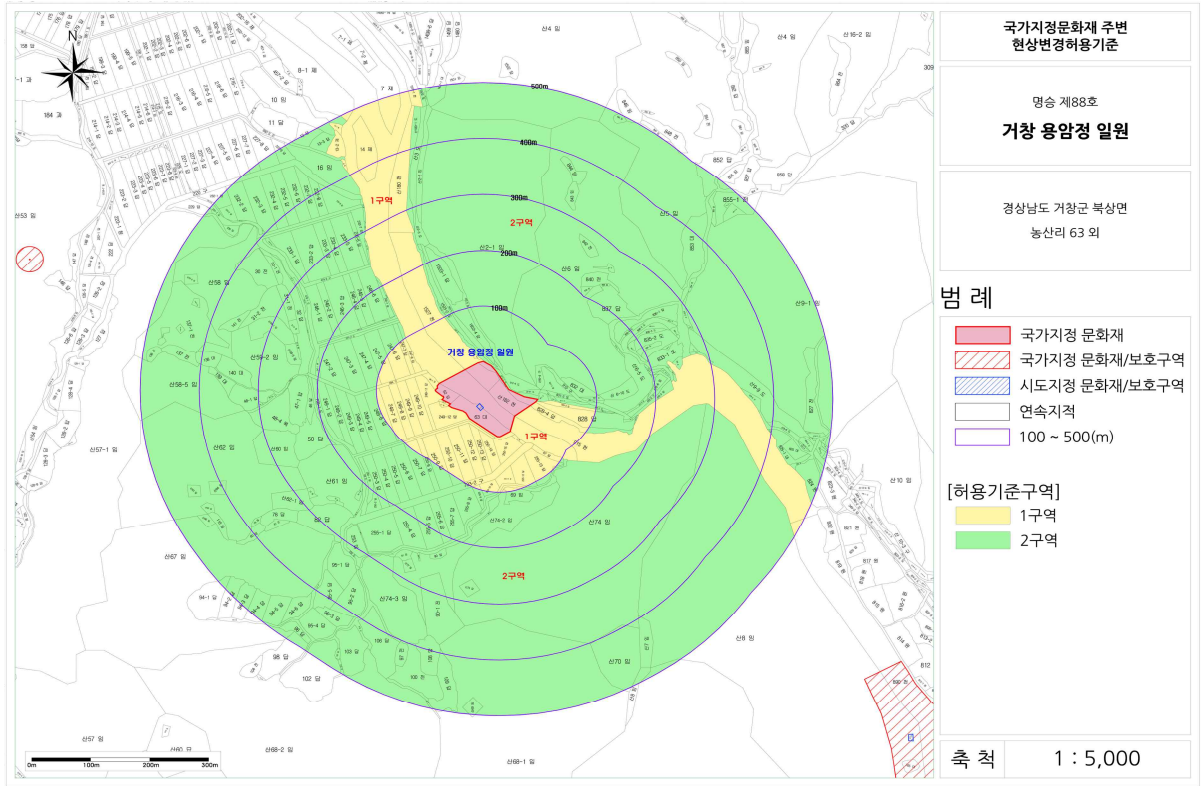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 건축물 또는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구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구역 기준 적용(예를 들어 1구역과 2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심의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



라. 검토의견 (***)**

- 하천에 산재된 ‘용암유집’ 상 기암괴석의 보존과 「거창 수승대」와 연결된 하천형 명승 경관의 연계 보존을 위해 용암정 주변 하천 유역은 500m까지 1구역(개별심의)으로 거창군의 신청안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전문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2.13.)

- 거창군에서 신청한 허용기준(안)은 지정구역 경계선에서 북·남·서쪽으로 100m 이내 구역은 허용기준 1구역(개별심의)으로 하고, 동쪽은 도로 건너편 급경사 산사면의 배면부터 2구역(도시계획조례)으로 설정하였음.
- 용암정 상류는 ‘용암유집’에 기재된 기암괴석(병풍바위, 우산바위 등)이 밀집 분포하고 하류는 「거창 수승대」와 연계된 하천으로 하천형 명승의 경관적 연계 보존차원에서 500m까지의 상·하류 하천유역은 1구역(개별심의)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의견 / 2017.1.26.)

- 문화재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농지와 임야는 농업진흥구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타 법령에 의해 건축행위 등에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문화재로부터 조망권에 포함되는 지역 중 100m 이내 최소한의 지역에 대하여 1구역(개별

심의)으로 설정하였고, 나머지 지역은 2구역(거창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으로 설정하여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과 사유 재산권과의 조화를 고려하였음

- 그리고, 문화재로부터 조망권에 포함되는 지역 중 100m 이내의 지역이라 하더라도 「거창 수승대」 관광지로 이어지는 하천을 넘어선 자연경관 바깥 37번 지방도를 경계로 하여 경관적 직접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는 문화재로부터 북동측 방향의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산6번지 주변 지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2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 수승대와 접치는 부분은 2구역으로 통일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

바. 의결사항

- 보류
 - 용암정과 대각선으로 마주보는 지역의 기존 현상변경 허가사항에 대한 검토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보류 9명

【검토사항】

안건번호 천기 2017-02-12

12.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문화재구역 일부 해제 및 추가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소재 천연기념물 제374호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의 문화재구역 일부해제 및 추가지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문화재구역 일부해제 및 추가지정 신청에 따라 적정성 검토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구역을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경 과
 - '16.12.30.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구역 일부 해제 및 추가지정 신청 (***** → 문화재청)
 -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회 심의(가결/16.10.24)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374호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산15번지
 - 지정일 : 1993.08.19
- (3) 신청내용

(단위 : m²)

소재지	기 지정 면적			일부해제 신청 면적			추가지정 신청면적			변경 지정면적		
	필지	지적 면적	지정 면적	필지	지적 면적	지정 면적	필지	지적 면적	지정 면적	필지	지적 면적	지정 면적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1	448,165	448,165	1	256	256	1	593	593	2	448,502	448,502

(4) 일부 해제 및 지정 사유

-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문화재구역 중 비자림관리사무소 신축부지에 일부 편입된 지역을 해제하고 편입된 지역과 교환 추진중인 구좌읍 평대리 2984번지(도유지) 593㎡를 문화재 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비자나무 숲 보존관리에 활용하기 위함

라. 검토의견(*****)

- 비자나무 숲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신청지는 현재 공유지로 기존 비자나무 숲 문화재구역과 연결하여 비자나무 가 약 30여 그루 생육하고 있어 추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 문화재구역에서 해제 요청한 비자림 관리사무소 신축부지 지역은 비자나무 숲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신축된 사무소인 만큼 문화재구역에서 해제할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 문화재위원, *** 문화재 전문위원 의견 / 2017.2.14)

- 현지조사 결과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신청 대상지의 경우 당초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문화재구역과 연결하고 비자나무가 생육하고 있어 기존 비자나무 숲을 연계하여 확대한다는 점에서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문화재구역 해제를 신청한 지역은 현재 비자림 관리사무소 건물이 있는 곳으로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필요 시설물이므로 문화재 구역 해제는 불필요하며 현재와 같이 문화재구역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바. 문화재구역 일부해제 및 지정 대상과 범위

(1) 제주특별자치도 신청안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일부 해제 및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성명	주소
1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산15-1	임야	256	-	256	문화재청	대전 서구 청사로
2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2984-1	잡종지	593	593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제주시 문연로
합계					593	256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일부 해제 및 추가 지정 후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	지정면적 (㎡)	성명	주소
1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산15	임야	447,909	447,909	문화재청	대전 서구 청사로
2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2984-1	잡종지	593	593	제주특별자치도 (향후 문화재청과 교환 예정)	제주 제주시 문연로
합계				448,502	448,502		

(2) 문화재청 조정안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	지정면적 (㎡)	성명	주소
1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2984-1	잡종지	593	59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제주시 문연로
합계					593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추가 지정 후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	지정면적 (㎡)	성명	주소
1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산15	임야	447,909	447,909	문화재청	대전 서구 청사로
2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산15-1	임야	256	256	문화재청 (향후 제주도와 교환 예정)	대전 서구 청사로
3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2984-1	잡종지	593	593	제주특별자치도 (향후 문화재청과 교환 예정)	제주 제주시 문연로
합계				448,758	448,758		

붙임 : 위치도 및 사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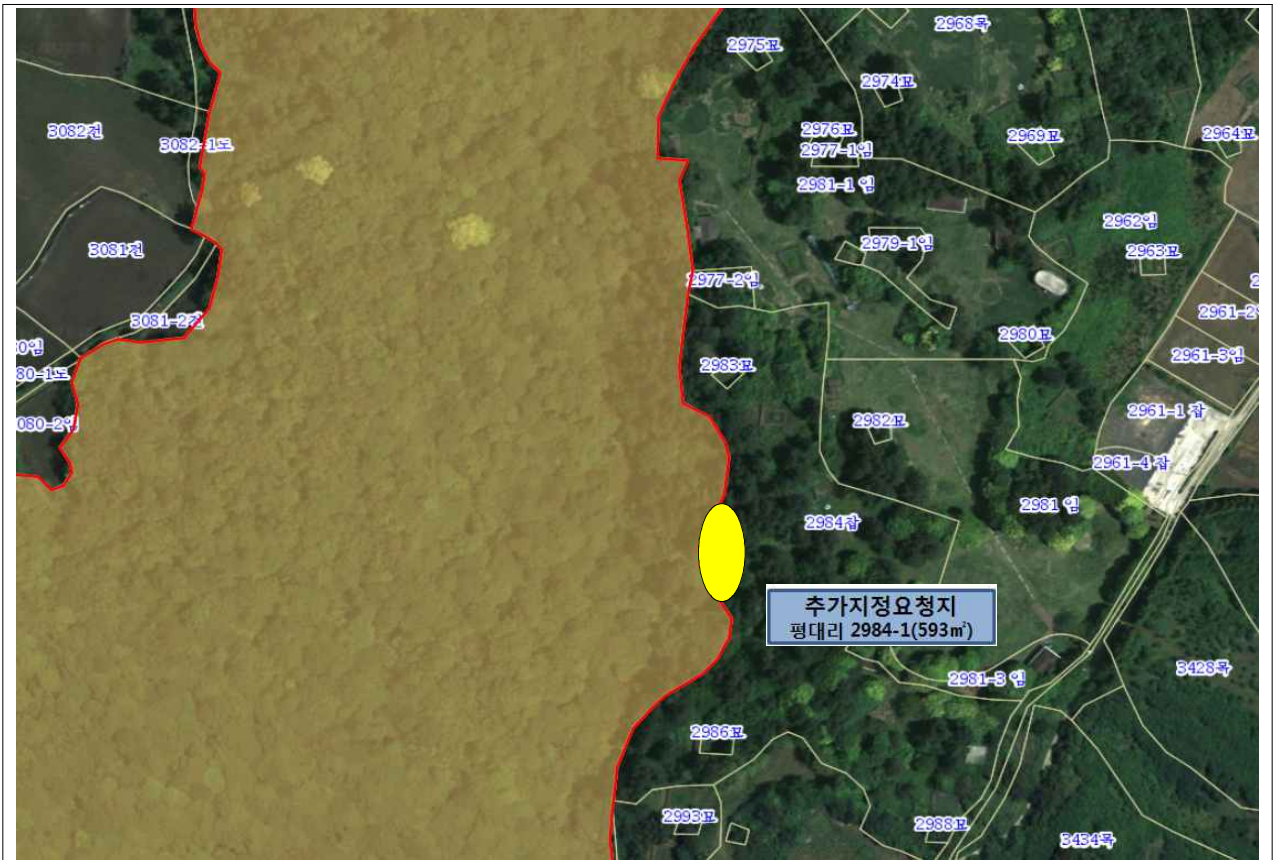
□ 문화재구역 일부해제 및 지정 위치도



□ 문화재구역 일부해제 신청지 항공사진



□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신청지 항공사진



□ 문화재구역 일부해제 신청지 사진



□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신청지 사진



사.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평대리 비자나무숲 문화재구역에서 해제 요청한 평대리 산15-1번지 256m²는 문화재 구역으로 유지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조건부 가결 9명

【보고사항】

안건번호 천기 2017-02-13

13.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가. 보고사항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조치한 사항임.(46건)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현상 변경 허가	천연기념물 제201-2호 큰고니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위치추적기 부착 및 혈액샘플 채취 ○ 신청목적 : 큰고니의 이동경로 추적연구 ○ 수량 : 1개체 ○ 허가기간 : 2017.1.26~3.25	<허가>
	천연기념물 제323-7호 매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위치추적기 부착 후 방사 ○ 신청목적 : 매의 이동경로 추적연구 ○ 수량 : 1개체 ○ 허가기간 : 2017.1.26~3.25	<허가>
	천연기념물 제201-2호 큰고니	○ 신청인 : ***** ○ 허가사항 : 큰고니 폐사체 소각 ○ 신청목적 : 폐사에 따른 질병검사 후 소각처리 ○ 수량 : 1개체	<허가>
	천연기념물 제201-3호 흑고니	○ 신청인 : ***** ○ 허가사항 : 흑고니 폐사체 매장 ○ 신청목적 : 폐사에 따른 매장 ○ 수량 : 1개체	<허가>
	천연기념물 제243-1호 독수리	○ 신청인 : ***** ○ 허가사항 : 독수리 폐사체 매장 ○ 신청목적 : 폐사에 따른 매장 ○ 수량 : 1개체	<허가>
	천연기념물 제323-1호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참매 폐사체 시료채취 후 매장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참매	○ 신청목적 : 폐사체 부검 후 매장 ○ 수량 : 1개체	
	천연기념물 제331호 점박이물범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점박이물범 폐사체 박제 ○ 신청목적 : 전시 및 교육 ○ 수량 : 1개체(박제일련번호 : 2017-경북-1) ○ 보관장소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허가>
	천연기념물 제190호 한강의 황쏘가리	○ 신청인 : **** ○ 허가사항 : 황쏘가리 폐사체 박제 ○ 신청목적 : 전시 및 교육 ○ 수량 : 1개체(박제일련번호 : 2017-강원-1) ○ 보관장소 : 인제산촌박물관	<허가>
	천연기념물 제324-2호 수리부엉이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수리부엉이 폐사체 부검 및 소각 ○ 신청목적 : 폐사체 질병검사 후 소각처리 ○ 수량 : 1개체	<허가>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원앙 자연방사 ○ 신청목적 : 조류장 폐쇄에 따른 원앙 자연방사 ○ 수량 : 4개체(암 3, 수 1) ○ 방사장소 : 경북 영주시 안정면	<허가>
	천연기념물 제201-2호 큰고니	○ 신청인 : ***** ○ 허가사항 : 큰고니 폐사체 박제 ○ 신청목적 : 전시 및 교육 ○ 수량 : 1개체(박제일련번호 : 2017-서울-1) ○ 보관장소 : 서대문자연사박물관	<허가>
	천연기념물 제324-7호 큰소쩍새	○ 신청인 : ***** ○ 허가사항 : 큰소쩍새 유전자 시료(혈액샘플) 채취 ○ 신청목적 : 맹금류 유전체 연구 ○ 수량 : 1개체	<허가>
	천연기념물 제324-2호 수리부엉이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수리부엉이 박제 소각 ○ 신청목적 : 박제의 변질 및 부식 ○ 수량 : 1개체(박제일련번호 : 2000-광주-125)	<허가>
	천연기념물 제243-1호 독수리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위치추적기 부착 후 방사 ○ 신청목적 : 이동경로 파악 및 월동지 이용실태 조사 ○ 수량 : 1개체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수달 폐사체 부검 및 소각 ○ 신청목적 : 폐사에 따른 부검 후 소각처리 ○ 수량 : 1개체 	<허가>
	천연기념물 제162호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내 태풍피해 복구 - 사업위치 :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5647번지(3013-3지선)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전석쌓기 L=20m, H=2.5m ○ 허가기간 : 2017.02.08~2018.02.07 	<허가>
	천연기념물 제420호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일출로 가공전선 지중화 공사 - 사업위치 :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399-16번지 ~278-2(일출로)(문화재구역 외곽경계와 연접(1~4구역)) - 사업내용 : 지중화 굴착 814m, 맨홀 21식, 지상개폐기 2대, 지상변압기 6대 설치 ○ 허가기간 : 2017.02.17~2018.02.16 	<허가>
	천연기념물 제154호 함양상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함양상림 내 귀부 및 비신 이전 - 사업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560번지 2호 (문화재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함양상림 내 귀부 및 비신 이전 ○ 허가기간 : 2017.2.3. ~ 2017.3.24. 	<허가>
	천연기념물 제293호 상주 상현리 반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시료 채취 - 사업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화서면 상현리 50번지 1호 - 사업내용 : 접수 채취 30점 ○ 허가기간 : 2017.2.3. ~ 2017.3.24. 	<허가>
	천연기념물 제30호 양평 용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시료 채취 - 사업위치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626번지 1호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은행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 시료 채취 50개체(그루터기 등에서 발생한 멩아 채취) ○ 허가기간 : 2017.2.3. ~ 2017.4.30. 	
	천연기념물 제286호 파주 무건리 물푸레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시료 채취 - 사업위치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무건리 465번지 - 사업내용 : 접수채취 30점, 엽시료 채취 ○ 허가기간 : 2017.2.6. ~ 2017.3.31. 	<허가>
	천연기념물 제292호 문경 화산리 반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시료 채취 - 사업위치 :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화산리 942번지 - 사업내용 : 접수채취 30점 ○ 허가기간 : 2017.2.6. ~ 2017.3.31. 	<허가>
	천연기념물 제351호 속초 설악동 소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시료 채취 - 사업위치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20번지 5호 - 사업내용 : 접수채취 30점, 화분 채취 ○ 허가기간 : 2017.2.6. ~ 2017.3.31. 	<허가>
	천연기념물 제295호 청도 동산리 처진소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시료 채취 - 사업위치 :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동산리 151번지 1호 - 사업내용 : 접수채취 30점 ○ 허가기간 : 2017.2.7. ~ 2017.3.31. 	<허가>
	천연기념물 제460호 포천 직두리 부부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시료 채취 - 사업위치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190번지 7호 - 사업내용 : 접수채취 30점 ○ 허가기간 : 2017.2.7. ~ 2017.3.31. 	<허가>
	천연기념물 제51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영양 무창리 산돌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시료 채취 - 사업위치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 372번지 - 사업내용 : 접수채취 30점, 엽시료 채취 ○ 허가기간 : 2017.2.8. ~ 2017.3.31.	
	천연기념물 제399호 영양 답곡리 만지송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시료 채취 - 사업위치 :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답곡리 산 159번지 - 사업내용 : 접수채취 30점 ○ 허가기간 : 2017.2.8. ~ 2017.3.31.	<허가>
	천연기념물 제358호 함양 목현리 구송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시료 채취 - 사업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목현리 854번지 - 사업내용 : 접수채취 30점, 엽시료 채취 ○ 허가기간 : 2017.2.9. ~ 2017.3.31.	<허가>
	천연기념물 제470호 화성 전곡리 물푸레나무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시료 채취 - 사업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149번지 2호 - 사업내용 : 접수채취 30점, 엽시료 채취 ○ 허가기간 : 2017.2.13. ~ 2017.3.31.	<허가>
	천연기념물 제386호 진안 은수사 청실배나무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시료 채취 - 사업위치 :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3번지 - 사업내용 : 접수채취 30점, 엽시료 채취 ○ 허가기간 : 2017.02.03 ~ 2017.03.31	<허가>
	천연기념물 제497호 정읍 두월리 청실배나무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시료 채취 - 사업위치 : 전라북도 정읍시 산내면 두월리 1493번지 - 사업내용 : 접수채취 30점, 엽시료 채취 ○ 허가기간 : 2017.02.03 ~ 2017.03.31	<허가>
	천연기념물 제354호	○ 신청인 : ***** ○ 허가사항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고창 선운사 도솔암 장사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시료 채취 - 사업위치 :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500번지 - 사업내용 : 접수채취 30점, 화분 채취 ○ 허가기간 : 2017.02.06~2017.03.31	
	천연기념물 제291호 무주 삼공리 반송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시료 채취 - 사업위치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산31번지 - 사업내용 : 접수채취 30점 ○ 허가기간 : 2017.02.09~2017.03.31	<허가>
	천연기념물 제364호 영동 매천리 미선나무 자생지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용두 소공원 내 공중화장실 교체 - 사업위치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384번지 2호(1구역/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m) - 사업내용 : 용두 소공원 내 공중 화장실 교체(화장실 건축연면적 : 17.36㎡, 높이 2.8m) ○ 허가기간 : 2017.3.1. ~ 2017.12.31.	<허가>
	천연기념물 제270호 부산 좌수영성지 곰솔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곰솔 주변 사당 철거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229번지 1호(1구역/문화재구역으로부터 5m) - 사업내용 : 사당(수영고당) 철거 ○ 허가기간 : 2017.4.1. ~ 2017.6.30.	<허가>
	천연기념물 제103호 보은 속리 정이품송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유전자원 보존 등을 위한 시료 채취 - 사업위치 :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 17번지 3호 - 사업내용 : 구과 10점, 가지 10점 채취 ○ 허가기간 : 2017.2.17. ~ 2017.11.30. ○ 허가조건 : 시료채취 시 가지 훼손 등 수목 생육에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여 시행할 것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435호 달성 비슬산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용리 산10번지 	<조건부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암괴류	<p>문화재 지정구역 내 위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 통나무집 4개동 개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 176.28㎡(44.07㎡ × 4개동) · 건축면적 : 153.60㎡(38.40㎡ × 4개동) · 건축물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1층 구조) · 외부마감 : 벽체(목재사이딩), 지붕(금속청굴) · 건축물 높이 : 5.895m('15년 허가시 최고 높이 5.995m)를 초과하지 않음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구조가 목구조에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변경됨으로, 이에 따른 구조적 안전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 자문을 받아 설계에 반영할 것 - 개축 건물들의 외관과 색상 등이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결정할 것 ○ 허가기간 : 2017.2.2~2018.1.31. 	
	천연기념물 제417호 태백 구문소 전기고생대 지층 및 하식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위치 :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498번지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기준 제3구역(태백시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함 - 사업내용 : 담수보(L:90m, H:0.7m), 옹벽·보축 및 기타 부대시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문소 수위변동 없도록 담수보 높이 0.7m로 조정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파기 공사는 지질학 전공자의 입회하에 공사를 진행하고, 가치있는 지질학적 자료 발견시 발굴·수거하여 박물관 등에 보관·전시·활용 - 담수보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어도를 설치하여 구문소 어류 생태계 변화를 최소화함 ○ 허가기간 : 2017.1.25 ~ 2017.12.31.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342호 제주어음리 빌레못동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위치 :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14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30m이격(제1·2구역) 	<조건부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건물11개동 및 지하수1공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면적 : 901.14㎡ · 연면적 : 1,213.82㎡ · 구조 :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 층수 : 지상2층 · 건물높이 : 경사지붕 7.85m, 평지붕 6.3m · 정화조 : 스코리아담체접촉폭기방식55톤*1식 · 지하수 : 생활용수(음용) 60㎡/일 ※ 기허가내용 : 현상변경허가(천연기념물과-6609호, 2014.12.19.), 허가사항 변경허가(천연기념물과-5018호, 2015. 8.17)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수 개발을 위한 시추 작업시, 동굴이 발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추 작업시에는 반드시 관계 전문가가 입회하여 확인토록 할 것. - 터파기 등으로 동굴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매장문화재보호 발견신고를 할 것 - 생활오폐수나 자동차 출입에 따른 토양오염으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완벽한 배수 및 처리 시설을 할 것. ○ 허가기간 : 2017. 2. 7 ~ 2017. 12. 31. 	
	천연기념물 제526호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위치 :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16-7번지 일원 문화재 지정구역 내 위치 - 사업내용 : 목재난간(H:1.0m, W: 1.1m) 3경간 설치 태풍으로 유실된 구간 기존 규모 재 설치 ○ 허가기간 : 2017.1.25 ~ 2017.6.30.	<허가>
	천연기념물 제438호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변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위치 :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515-5도 - 사업내용 : 전원공급용 전기관 매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형관 직경100mm, 굴착길이 9m, 굴착폭 0.42m, 굴착높이 0.77m ○ 허가기간 : 2017.2.2 ~ 2017.6.30.	<허가>
	천연기념물 제438호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변	○ 신청인 : **** ○ 신청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위치: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473-1번지 1구역내(원지형보존지역) - 사업내용: 노상주차장 조성 1식(A=982㎡) 	<불허>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파기 심도(D)=67cm(평균), 보조기층 포설 T=15cm 잔디블럭 포장 T= 8cm 	
	명승 제7호 여수 상백도 하백도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산 30번지 등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수산물 포획·채취·반출 허가기간 내 총125톤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시행하되, 맨손, 나잠, 배낚시 허용, 그외 갯바위 낚시, 산소통착용 등 잠수기 어법 방법에 의한 채취는 불가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맨손어법에 의한 해수 만조선 이내 접안상륙은 허용, 그외 백도 내 선박의 접안 및 출입을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 백도 출입관련 사항 기록과 포획채취량을 기록, 차후 신청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외에 다른 일체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 채취, 반출 행위 시 자연환경·경관의 훼손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문화재의 훼손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허가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허가기간 : 2017.2.7.~2019.1.26. 	<조건부 허가>
	명승 제17호 부산 영도 태종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부산 영도 태종대 내 순환도로 주변 위험목 제거 - 사업위치: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산29번지 1호 (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순환도로(4.3km) 중 법면사면 도로주변(1.4km) 재해위험목 172주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구간(태원휴게소~구명사) : 굴피나무 등 7주 · 2구간(구명사~남향조망대) : 느티나무 등 45주 · 3구간(군부대~전망대) : 느티나무 등 4주 · 4구간(전망대~태종사) : 팽나무 등 110주 · 5구간(태종사~광장) : 소나무 등 6주 ○ 허가기간 : 2017.2.16~2017.12.31.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명승 제64호 지리산 화엄사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지리산 화엄사 일원 내 보적암 대응전 건립 - 사업위치 :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번지 등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대응전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가설건축물 철거 : 면적 120㎡, 높이 3.5m · 대응전 : 건축면적 54㎡(정면 3칸, 측면 2칸) 높이 9.76m, 팔작지붕, 다포양식 · 대응전 화강석 기반 : 면적 120.96㎡, 높이 1m, 계단 3개소 ○ 허가기간 : 2017.2.15.~2018.1.31. 	<허가>
	명승 제66호 두륜산 대흥사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 ○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대흥사 진입도로 주변 화장실 신축(춘교~운송교간) - 사업위치 :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산 24번지 1호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식목구조 1동 : 30.96㎡ (정면 3칸, 측면 1칸, 맞배지붕, 회벽미장 및 벽돌조) · 정화조 매립 (10ton) · 수목 식재(배롱나무 5주, 꼬리조팝 및 수국 등 35주) · 정화조 보호용 매쉬웬스(L= 28m, H=0.7), 벤취 2개, 이정표 2개 ○ 허가기간 : 2017.2.10.~2018.1.31. 	<허가>

나. 의결사항

-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접수 9명